

주주총회 전자투표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이 윤 석*
Lee Yun-Seok

목 차

- I. 서론
- II. 전자투표제도의 개요와 문제점
- III. 전자투표제도의 활성화 방안
- IV. 결론

국문초록

전자투표제도는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회사와 사회의 비용을 절감하고 회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등의 여러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상법 개정으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아직 제도의 입법적인 불비와 회사 경영진의 주주참여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하여 제도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전자투표제도의 입법적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입법적 과제로 검토한 것은 웹공시제도의 시행, 전자투표의 기한, 전자투표관리기관에 관한 규정, 수정제안이 있는 경우 전자투표의 취급 등이다. 그리고 전자투표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직접적인 입법방안, 그림자 투표의 폐지, 상장회사의 표준 정

논문접수일 : 2012.12.29

심사완료일 : 2013.01.22

게재확정일 : 2013.01.24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관 또는 기업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도입하는 방안, 상장 회사의 상장 요건에 규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전자투표제도, 전자투표제도의 활성화, 주주총회의 전자의결권, 상법 제도의 전자화, 전자주주총회

1. 서론

현대 IT기술의 발전으로 상법상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사용자의 참여를 늘리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의 전자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상법의 전자화와 관련하여 우선 상법은 회사, 주주, 채권자, 운송인 등이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증권발행을 전자화하고 있다.¹⁾ 그리고 주식회사 운영의 효율성과 주주의 투표권 보호를 위하여 주식회사 운영을 전자화하고 있다.²⁾ 본 논문에서는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의결권행사의 전자화와 관련된 문제에 한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주주상호간의 의견 개진과 토론을 통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감시·감독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 확대에 의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경영자의

- 1) 이에 관한 규정으로 상법은 유가증권의 전자등록 발행(상법 제65조), 주식의 전자등록 발행(상법 제356조의2),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발행(상법 제516조의7), 신주인수권증서의 전자등록(상법 제420조의4), 채권의 전자등록 발행(상법 제474조 제1항 제10의2, 제478조 제3항, 상법 제488조 제5호) 등 유가증권의 발행 및 관리를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들을 다수 두고 있다. 그리고 유가증권 이외에 전자선하증권의 발행(상법 제862조 제1항 내지 제5항), 해상화물운송장의 전자식 발행(상법 제863조 제1항), 여객항공권의 전자적 발행(상법 제921조 제2항), 항공화물운송장의 전자적 발행(제924조 제1항) 등을 규정 하고 있다.
- 2) 이에 관한 규정으로 회사의 전자공고(상법 제289조 제3항 내지 제6항), 주주총회 소집의 전자공고(상법 제542조의4)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주주명부 관리(상법 제352조의2 제1항), 주주총회 소집 통지(상법 제363조 제1항), 사채권자집회 소집 청구(상법 제491조 제2항), 사원총회 소집 통지(상법 제571조 제2항), 주주제안(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청구(상법 제366조 제1항), 의결권 불통일행사통지(상법 제368조의2 제1항), 집중투표청구(상법 제382조의2 제2항, 제542조의7 제1항)를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68조의4).

권한 강화, 소액주주들의 경영에 대한 무관심과 지배주주의 등장, 주주 구성의 다양화로 인한 주주총회참석의 비용과 시간의 증대 등으로 주주총회는 경영자 및 지배주주의 정책결정을 단순히 추인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여 본래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금융선진국들은 최근 급속히 발전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전자투표제도를 주주총회에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호응하여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선진국인 우리나라도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하여 전자투표제도를 포함하여 여러 회사제도를 전자화하고 있다. 즉, 2009년 개정상법은 소집통지의 전자화, 전자주주명부의 작성,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하면서,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68조의 4 제1항). 그러나 전자투표제도는 아직 입법 및 해석에 있어서 의문점이 있으며, 회사의 동제도의 채택 현황도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저조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전자투표제도의 정의, 요건, 절차,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논의되는 문제들을 검토하고, 전자투표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II. 전자투표제도의 개요와 문제점

1. 전자투표와 전자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는 주주 또는 그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출석하거나 서면투표를 하는 대신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전자투표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주주에게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서면투표와 동일하다. 그러나 서면투표는 우편으로 전달되어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서면투표 시와 주주총회 개최 시 사이에 회사의 상황이 변화된 경우에 주주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에 전자투표는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

하여 주주의 의사가 전달되어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한 전자문서를 회사에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원격지에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실시간으로 참여하여 현장에서와 동일하게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의 전자투표제도가 서면투표의 전자화인가 아니면 주주가 현장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대신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전자투표제도가 주주총회의 불출석을 전제로 한 서면투표제도의 전자화인가 혹은 전자주주총회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로서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전자적 방법으로 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인가의 견해 대립이다. 우선 전자투표를 서면투표의 전자화로 보는 견해³⁾는 개정 신탁법이 기명식 수익증권의 수익자집회의 소집통지와 의결권 행사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개정 신탁법 제72조 제3항, 제72조 제5항, 제73조 제3항). 그러나 신탁법이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고 해서 상법상 전자투표제도가 서면투표의 전자화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개정상법에서는 전자투표제도를 서면투표제도와는 별도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라는 제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368조의4), 서면투표제도의 전자화라고 하기 보다는 현장주주총회에 출석하는 대신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⁴⁾ 즉, 전자투표제도는 주주총회가 전자화되어 가는 단계에서 소집통지의 전자화로부터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전자주주총회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⁵⁾

전자주주총회는 주주가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통신의 방법으로 총회의 결의에 참여하는 주주총회를 말한다.⁶⁾ 전자주주

- 3) 정승화,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와 그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기업법연구」 제26권 제2호(2012.6), 128면.
- 4) 정경영,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23권 제3호(2004), 102면; 정완용,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에 관한 고찰", 「상사법연구」 제28권 제3호(2009), 380면.
- 5) 정완용,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점 고찰", 「전자투표제도 활성화 방안」(국회 금융정책연구회, 2009. 7. 22), 28면.

총회의 개념범위에는 소집절차만 전자화된 주주총회부터 모든 절차가 전자화된 주주총회까지 포함될 수 있다. 이 중 협의의 전자주주총회(가상주주총회)는 현장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주주가 전자적 방식으로만 참여하여 진행되는 주주총회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광의의 전자주주총회는 주주가 현장주주총회에 출석하는 대신에 전자적 방식으로 참여하여 진행(토론, 의결)하는 주주총회를 의미한다. 상법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의의 전자주주총회를 전제로 하고 있다. 상법이 광의의 전자주주총회를 채택한 이유는 협의의 전자주주총회가 주주들의 의사가 보다 정확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으나 기술적 제약과 전산시스템의 유지 및 운영에 관한 문제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주총회의 전자화를 단계별로 구분하면,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전자화 단계,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 단계(전자투표), 전자주주총회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주주총회 단계는 주주총회 참여와 의사운영의 전자화단계와 가상주주총회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⁷⁾ 이 중 현행법은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 단계로 볼 수 있다.⁸⁾

2.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요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

- 6) 김성탁, "전자주주총회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연구」, 제11권 3호(2004.9), 297면. 즉 전자주주총회는 주주의 총회불출석과 전자적 원격통신방식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요건으로 한다. 주주총회의 설명이나 질의 응답, 의안에 관한 찬부투표 등 총회의 전부를 모니터 시스템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화한 형태로 이해하여 전자주주총회 대신 가상주주총회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견해도 있다. 양만식, "상법상의 IT화", 「인터넷법연구」 제1호(2002), 576면. 그러나 가상주주총회는 모든 주주총회의 진행이 전자적으로 행해지는 협의의 전자주주총회를 의미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 7) 김재범, "전자식 방법의 상법수용에 관련된 법률문제", 「상사법연구」 제28권 제1호(2003), 257면; 정경영, "전자주주총회의 법리에 관한 시론", 「비교사법」 제12권 제4호(2005), 453면.
- 8) 현행 상법상으로도 전자주주총회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현행 상법규정에서 전자주주총회를 명백히 금지하지 않고, 상법 제364조에서 총회의 소집지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을 둘 수 있으며, 주주총회의 직접 출석은 총회의 절대적 요소가 아니므로 전자주주총회도 가능하다고 한다. 정쾌영,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상사법연구」 제21권 제3호(2002), 329면. 그러나 현행법상 전자투표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법은 현장 주주총회를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요건으로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고 있다(상법 제368조의 4). 상법이 모든 회사에 전자투표를 강제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전자투표제도를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자투표 이용이 불필요한 소규모회사와 기업마다 전자화에 대한 대응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정관규정에 의하여 채택하도록 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채택하도록 한 것은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편의성과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회사가 쉽게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기를 바라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서면투표는 정관에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전자투표의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을 두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⁹⁾도 있다. 그리고 이사회 결의의 요건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 대신 정관에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와 이사회가 전자투표채택에 관한 포괄적 결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도 논의되고 있다. 우선 전자투표의 채택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 대신에 정관의 규정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정관 기재사항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은 한 이사회 결의사항에 우선할 수 있고, 전자투표 채택을 정관으로 정하더라도 상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¹⁰⁾ 그리고 정관으로 전자투표제도를 규정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이사회에 불채택권한을 유보하지 않은 이상 이사회 결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이사회가 앞으로의 주주총회는 모두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도록 포괄적으로 결의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포괄적인 결의도 가능하다고 본다.¹¹⁾

3. 전자투표의 절차

9) 정준우,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의 편의성 제고와 그 문제점”, 「법학연구」 제13집(2010), 34면.

10) 정경영·이세영, “전자투표제도 도입 이후 주주총회 변화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23권 제1호(2011), 348면.

11) 상계 논문, 347면.

가. 전자투표에 대한 사전 통지 및 공고

회사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나 공고에 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전자투표를 할 기간, 그 밖에 주주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상법 제368조의 4 제3항, 시행령 13조의 2항). 주주총회 공고와 관련하여서 웹 공시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웹 공시제도는 주주총회의 참고서류, 사업보고서 등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함께 주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를 정관의 정함에 따라 등기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면 당해 게재된 사항의 정보가 주주에게 통지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¹²⁾ 우리 상법상 웹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회사가 통지사항을 게시하고 웹사이트 주소를 주주에게 고지한 경우에 통지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즉 통지의 개념에는 주주총회와 관련한 정보를 담은 전자문서의 송신이라는 것이 필수적 요소이므로 웹공시제도를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¹³⁾ 그러나 웹 공시제도는 회사의 주주들이 주주총회와 관련 되는 과거정보와 현재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편리하게 조회하며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상법상 명문으로 웹 공시제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¹⁴⁾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부분적으로만 웹 공시제도를 인정하고 있다(상법 제542조의4 제1항,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12) 김순석, 「전자주주총회」(한국예탁결제원, 2008), 8-9면.

13) 정경영, "전자금융거래법안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전자증권과 관련하여", 「증권예탁」 제44호(2002.4), 63면.

14) 정승화, 전계 논문, 142면.

나. 주주확인절차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와 같이 주주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 상법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주주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13조 1항). 현재 공인전자서명은 본인 확인을 위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전자거래기본법 등에서도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을 의사의 진정성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주주확인방법은 전자투표의 보안과 안정적 시스템운용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본다.¹⁵⁾ 이에 대하여 전자인증이나 전자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며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절차를 회사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¹⁶⁾가 있다.

다. 전자투표의 행사기간

주주로서 확인과정을 거친 자는 회사가 통지한 인터넷 주소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전자투표를 하게 된다. 투표기간은 회사가 정할 수 있으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시행령 13조 2항 2호). 주주총회 전일 중 전자투표의 마감을 언제로 보느냐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총회 전일의 영업시간 이내로 보는 견해, 총회 전일의 24시까지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회사 및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의 원활한 전자투표의 관리를 위하여 영업시간 종료시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¹⁷⁾ 한편 전자투표시한을 주주총회 전날로 한 것은 입법 당시에 IT 기술상 주주총회 당일의 투표결과를 현장주주총회의 결과와 합산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회의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그러나 투표기간을 총회 전일까지로

15) 허항진, “개정 상법상 전자투표제도와 주요 법적 논점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제38집(2010), 311면.

16) 김순석, “주주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에 따른 법적 과제”, 『서울법학』 제18권 제1호(2010), 301면.

17) 정찬영, “주식회사법 개정제안”, 『선진상사법률연구』 제49호(2010), 41면.

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서면투표제도에서 문제되는 것처럼 투표결과가 사전에 모두 집계되어 노출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현재의 IT 기술 상태로 볼 때,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투표결과가 즉시 회사에 전달되어 이를 바로 현장주주총회에서 투표결과와 합산하여 총회의 결의를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입법에 의하여 주주권의 자유롭고 편리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간적인 제약 없이 현장주주총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자유롭게 전자투표제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¹⁹⁾

라. 전자투표관리기관

회사는 전자투표관리기관에 주주확인절차 등 의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상법시행령 제5조의2 제4항). 상법은 전자투표의 운영을 위한 전자투표관리기관에의 위임규정만 두고 있고 전자투표관리기관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관리기관의 자격, 구성, 운영, 의무 등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다.²⁰⁾ 현재 국내에서 전자투표관리기관업무는 예탁결제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을 제정하여 전자투표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른 전자투표관리기관의 주요 업무는 (i) 전자투표권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 (ii) 전자투표 행사 관리, (iii) 전자투표 및 주주총회 결과 관리 등이다. 그리고 전자투표관리기관은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의결권 행사에 관한 참고자료 등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전자투표기간 동안 전자투표권자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3조).

마. 기록의 열람 및 보관 등

18) 주주의 의결권 보장과 회사의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법과 같이 주주총회 전날까지 행사기간을 정한 입법에 찬성하는 견해도 있다. 허항진, 전계 논문, 302면.

19) 정경영·이세영, 전계 논문, 342면.

20) 상계 논문, 346면.

전자투표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의 결과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장주주총회보다 더 많으므로 전자적 기록의 열람 및 보관이 중요하다. 상법은 회사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주주총회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68조의4 제5항). 그리고 전자투표에 관한 의결권 행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현장주주총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전자투표관리기관과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주주총회에서 개표시까지 전자투표의 결과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

4. 의결권의 행사

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와 집중투표

상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통지한 후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68조의2).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는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에 실익이 있고 이는 전자투표에 있어서도 같다. 그리고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도 전자투표에서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은 이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하는 전자투표권자는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전자투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뜻과 이유를 위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15조). 그리고 회사는 주주가 이사선임에 관한 집중투표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전자투표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자투표관리기관이 이러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전자투표권자가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재투표하지 아니한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한다(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16조).

나. 서면투표 이용 제한

서면투표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한 자가 전자투표를 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장에 참석하진 경우와 동일하게 서면투표가 철회·변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²¹⁾ 그러나 상법은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서면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는 전자투표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68조의4 제3항, 제4항).

다. 의결권의 분할 행사

전자투표를 하는 주주가 자신이 가진 주식 중에 일부만 전자투표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가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우선 주주가 의결권 중 일부는 전자적 방법으로 찬성하고 일부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반대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에 해당하여 의결권 불통일행사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은 부적법하다고 본다. 그러나 의결권의 내용을 동일하게 행사하는 경우, 즉 전자투표로 일부 행사하고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의결권 행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²²⁾

라. 전자투표의 철회 및 변경

주주가 전자투표를 한 후에 투표기간 중에 철회나 변경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현행 상법 시행령은 전자투표의 경우에 의결권을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시행령 13조 3항). 그러나 동법은 전자투표를 한 후에 전자적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도 철회·변경이 불가능한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결론적으로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주주가 주

21) 양만식, “서면투표와 전자투표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상사판례연구』 제16권(2004), 90면.

22) 정경영, “전자투표제도의 시행에 따른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증권예탁』 제75호(2010), 17-18면.

주총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철회·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³⁾ 입법적으로는 전자투표의 경우 투표 마감 후 최종투표결과만을 집계하면 되기 때문에 투표가 마감되기 전에는 자유롭게 변경 또는 철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²⁴⁾ 한편 현행법 하에서도 마감일까지 철회 및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서면투표의 경우에 도달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자투표를 서면투표의 전자화로 본다면 전자투표의 효력도 도달한 때에 발생하고, 당해 회사가 투표결과를 확인하기 전에는 전자투표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²⁵⁾ 그러나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보며(제6조 1항),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때를 수신한 시점으로 본다(6조 2항 1호).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을 유추적용하면 주주가 회사에 의하여 지정된 전자정보처리장치에 투표의사를 입력한 때에 회사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는 철회 및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마. 수정제안의 문제

현행 전자투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주주총회 전일까지만 행사가 가능하므로 주주총회 도중에 수정제안이 있는 경우 이미 행사한 전자투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²⁶⁾ 특히 전자투표로 주주의 과반수 이상이

23) 이 같은 해석은 회사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원활한 주주총회의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것이므로 입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정찬영, 전계 논문, 41면.

24) 정경영·이세영, 전계 논문, 343면.

25) 박관훈, “전자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회사법제의 운영과 IT기술의 응용」(한일산업금융법포럼 발표자료, 2012. 11), 69면.

26)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수정동의취급은 원안에 대한 찬성표시는 반대한 것으로 취급하며, 원안에 대한 반대표시는 수정안에 대하여 기권으로 취급한다. 이에 비하여 발행회사의 신청에 의한 의결권 행사시 수정동의 취급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는 수정안이 부의되는 경우 민법상 수임인에게 인정되는 주의의무에 기하여 찬성여부 판단 및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위

의안에 대하여 반대를 하였지만 현장 주주총회에서 수정안을 제시하여 동의
를 얻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논의된다. 이러한 전자투표행사에
대한 수정동의에 관하여는 전자투표한 의결권 수를 수정안에 대한 의사정족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결석방식, 원안에 찬성한 전자투표는 수정안에 반대한
것으로 원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전자투표는 수정안에 기권한 것으로 보는
제도적 기권방식, 원안에 대한 찬부에 상관없이 이미 행사된 전자투표는 수정
동의안에 모두 기권한 것으로 보는 기권방식, 찬부에 상관없이 모두 반대한
것으로 보는 반대방식, 수정동의안에 영향이 없도록 출석한 의결권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전자투표 의결권수를 배분하는 그림자투표방식, 전자투표시에 미
리 그 처리에 관해 의장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 기권,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등
의 방법을 지시하는 사전위임방식, 전자투표시 어떠한 수정안이 제출되더라도
원안에 찬성, 어떠한 수정안이 제출되더라도 원안에 반대 또는 수정안이 제출
되면 그 결의에 대해서는 기권 등의 문구를 삽입하는 사전결정방식 등이 있
다.²⁷⁾ 이 중 타당한 방식은 주주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고 최대한 반영하는 것
이다. 우선 전자투표에 참여한 주주는 일단 투표에 참석할 의사였기 때문에
전자투표한 주주를 수정동의안에 대한 투표에서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하는 기
권방식은 주주의 의사에 반한다고 본다. 그리고 제도적 기권방식, 반대방식은
주주의 의사를 의제하여 획일적으로 처리하여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사전 위
임방식과 사전 결정방식은 주주의 의사를 고려하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전자투표시 회사가 미리 이러한 방식에 따라 위임 또는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권방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기권방식과 그림
자투표방식은 전자투표한 주주를 의결정족수에도 포함시키는 가에 차이가 있
지만, 전자투표한 주주라고 하더라도 수정된 사안에 따라 기권을 할 의사를
가질 수도 있으므로 그림자투표방식 보다는 기권방식이 더 주주의 의사가 왜
곡될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권방식도 주주의 의사를 정확
히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수정안에 관한 투표에 대한 처리를 입법

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질주주들을 대신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한 이상 그 해당 주식수는 여전히 의결정족수에 포함되게 된다.

27) 허항진, 전계 논문, 314면.

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바. 의결권의 대리행사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의 대리행사가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상법 제368조 제3항). 전자투표의 경우에도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대리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상법이 서면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이 규정하는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시켜 해석할 수 있는 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관하여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를 서면에 대체할 수 있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만(동법 제4조), 동법은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전자거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동법 제2조 제5호). 따라서 전자투표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전자거래기본법을 유추적용하지 않는 한, 전자문서가 포함될 수 없고, 이는 입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본다.²⁸⁾ 그리고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주주의 확인절차로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방법만을 인정하고 공인전자서명은 본인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전자적 방법에 의한 대리인의 전자투표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²⁹⁾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장 권유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위임장을 인터넷을 통하여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52조).³⁰⁾ 일반 회사의 경우에도 주주가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 대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³¹⁾

28) 상계 논문, 351면.

29) 공인전자서명의 비밀번호를 대리인에게 알려주어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의결권의 대행으로 볼 수 있어 대리의 일종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정경영, 전계논문(전자투표제도의 시행에 따른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18면.

30) 미국의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의 일반적 형태는 의결권의 전자적 위임방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송부하는 방식이다. 정완용, 전계논문(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에 관한 고찰), 399면.

31) 정찬형,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상사법연구」 제23권 제3호(2004), 74면.

5. 전자투표의 하자과 주주총회의 효력

전자투표는 인터넷을 통하여 행하여지므로 해킹, 바이러스 등의 다양한 문제로 시스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전자투표시스템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회사나 전자투표 관리기관이 시스템에 관한 관리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주주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주주의 경과실의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가이다.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용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다(32조, 60조 1항). 따라서 동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주주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 등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전자투표시스템의 하자가 주주총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가와 관계없이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전자투표시스템의 하자는 주주총회 결의방법의 하자로 볼 수 있으므로 결의취소의 사유 또는 결의부존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자투표시스템으로 인한 하자가 경미한 경우에는 결의취소의 사유가 되고 하자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량기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Ⅲ. 전자투표의 활성화 방안

1. 전자투표제도의 기능

가. 주주총회의 활성화

주주총회는 주주상호간의 의견 개진과 토론을 통한 최선의 회사의사형성을 이념으로 하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경영자의 권한 강화, 지배주주의 등장 등으로 주주총회

는 경영자 및 지배주주의 정책결정을 단순히 추인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여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주주총회가 경영자 및 지배주주의 전횡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전자투표를 포함한 주주총회의 전자화는 주주들의 시공간적 제약을 상당부분 해소함에 따라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이는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 주주의 권리 보호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주주들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주의 의사를 주주총회에 반영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주주총회는 총회꾼들에 의한 횡포방지 등을 위하여 특정일에 집중³²⁾하여 개최되어 전국 각지에서 여러 회사 주식을 소유한 개인 주주들은 주주총회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전자투표제도의 활용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다.

다. 의사정족수의 확보와 회사의 비용 절감

회사는 전자투표제도의 이용으로 용이하게 주주총회 의사정족수를 확보하여 주주총회 개최를 원활히 하고 주주총회 사무를 간소화 하며 주주총회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발행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2008년 사업연도 기준으로 주주총회를 위하여 상장회사 1사당 평균 1729만원 정도가 주주총회 비용으로 소모되고, 상장회사 전체로는 주주총회 운영 비용이 연간 3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비용(교통비, 기회비용 등) 등의 사회적 비용도 연간 49억 정도로 추산되는데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으로 이러한 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³³⁾

32) 매년 3월 셋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에 주주총회가 집중 개최되고 있으며, 주주총회 장소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분산 개최되고 있다. 김대수,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증권예탁」 제54호(2005), 19면.

라. 국제 경쟁력의 확보

OECD의 기업지배구조원칙은 회원국들이 전자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에 용이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³⁴⁾ 그리고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전자투표제도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우선 미국에서는 2000년 6월 개정된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주주총회 개최의 허용과 함께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주주총회의 참가와 의결권행사를 인정하였으며, 텍사스주, 미네소타주, 캔사스주 등에서도 유사한 입법을 하였다.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에 의하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는 그 결의로써 주주총회를 특정한 장소에서 개최하지 않고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만 개최할 수 있다(동법 211조 a항 1호). 따라서 현실공간에서의 주주총회는 물론,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만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양자를 병행할 수도 있다. 주주총회가 원격통신에 의하여 개최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주주총회기간 동안 주주명부의 접근방법을 기재하여 전자통신망상에 공개를 하거나 또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제211조 a항 2호).³⁵⁾ 일본은 2001년 11월 주주총회 등 회사운영의 IT화를 위한 상법개정을 통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 회사관계서류의 전자화와 함께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본 개정상법에 의하면 회사가 주주의 승낙을 얻어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대신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소집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동법 제232조 제2항). 영국에서는 2000년 5월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정보전달과 정보의 보존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통신법이 제정되었다. 독일에서는 2001년 1월 25일 기명주식과 의결권행사 간이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독일 주식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와 관련된 다수의 규정이 개정되었다.³⁶⁾ 따라서 전자투표제도

33) 허향진, 전계 논문, 304면.

34)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1999, p.28.

35) 정경영, 전계 논문(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100면.

36) 이형규, "전자투표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 『경영법률』 제16집 1호(2005), 217-226면.

는 기업경영의 IT화를 반영하는 세계적 입법추세에 부합하는 것이고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과 증권시장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2. 전자투표제도도입의 저해 요인

전자투표제도는 상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기능을 하고 특히, 주주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점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관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그러나 회사 경영자 입장에서는 주주들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주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³⁷⁾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그림자투표³⁸⁾에 의하여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경우에도 이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참여자가 현저히 부족하여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회사는 전자투표의 도입을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으로 회사가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도 동제도의 회피 이유가 된다.

3. 전자투표제도의 활성화 수단

가. 직접적인 입법에 의한 강제

전자투표제도를 이사회 결의에 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사들이 주주의 간섭을 기피하는 경향 때문에 전자투표제도가 채택되기 어렵다. 따라서 입법에 의한 강제수단으로 우선 전자투표제도를 원칙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

37) 우리나라에서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2010년에는 4개회사가 2011년에는 35개사(상장사 34사, 비상장사 1)가 이 제도를 이용하였다.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여탁결제원이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충족시켜주는 제도인 그림자투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14조 제4항). 그림자투표 제도는 주주총회 불성립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1995년에는 주주총회 의사정족수의 폐지, 1999년에는 서면투표제도의 도입, 2009년에는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으로 주주총회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그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여 볼 수 있다. 즉, 집중투표제도(상법 제382조의2 1항)와 같이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회사는 정관에 전자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어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³⁹⁾ 둘째,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하여 강제하는 방안이 있다. 즉, 자산 규모 또는 주주의 수가 일정 이상의 회사에게는 전자투표제도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다.⁴⁰⁾ 셋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와 연계하는 방안이다. 우리 상법상 회사는 주주의 동의를 얻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적으로 할 수 있으나 전자적 의결권 행사는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이를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68조의4). 일본의 경우에는 회사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요청을 승낙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의 전자적 소집통지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전자적 의결권 행사를 연계하고 있다(일본 회사법 제312조 제2항). 회사가 전자적으로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때에는 회사와 주주 모두 전자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주주의 동의를 얻어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전자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회사에 대한 전자적 의결권 행사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회사와 주주간의 형평과 주주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 지원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본다.⁴¹⁾

나. 그림자 투표제도의 폐지

그림자 투표(shadow voting)란 다른 주주의 찬반 의사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분할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그림자 투표를 하는 예탁결제원은 회사의 의결정족수만 채워 주고, 주주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립적인

39) 박관훈, 전계 논문, 76면.

40) 일본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서면 투표를 강제하고 있다(일본 회사법 제289조의2).

41) 정승화, 전계 논문, 147-148면.

투표권을 행사한다. 상장회사에 대한 그림자투표제도의 도입 당시에는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 출석이 요구되었으며 의결정족수도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이상 결의를 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식소유가 널리 분산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곤란하였으므로 그림자 투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1995년 개정상법은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완화하였고, 서면투표제도, 전자투표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그림자 투표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림자투표제도는 전자투표제도 등과 같은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는데 거부감을 갖게 하고, 전체 주주의 의사보다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의도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는 비판이 있다.⁴²⁾ 이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최근 개정안⁴³⁾에서는 그림자 투표를 폐지하고 있고 이는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동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투표제도와 그림자 투표를 연계하는 입법을 하자는 견해도 있다.⁴⁴⁾ 즉, 회사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의 참여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만 그림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입법한다는 것이다.

다. 전자투표제도 도입 회사에 대한 지원

전자투표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입법 이외에 수단으로는 상장회사협의회 등의 표준 정관에 동제도를 반영하거나, 기업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도입하는 방안, 상장회사의 상장 요건에 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 상장회사협의회 등의 표준정관에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면 상장회사들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데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전자투표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⁴⁵⁾

42) 김순석, 전계 논문, 293면; 허항진 전계 논문, 303면.

43)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2년 5월 11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99호.

44) 이 견해는 그림자 투표가 꼭 필요한 기업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박관훈, 전계논문, 78-79면.

둘째, 전자투표제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을 높이는 제도인 만큼 주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기업지배구조 우수기업선정기준⁴⁶⁾에 반영하여 기업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⁴⁷⁾ 셋째, 전자투표제도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등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의 운영에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⁴⁸⁾에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⁴⁹⁾

IV. 결론

전자투표제도는 주주의 입장에서는 시공간적인 제약을 해소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회사의 입장에서는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회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등의 여러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
- 45)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회원사들의 정관 제·개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정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상장회사들은 표준정관의 반영사항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상장협회의회의 표준정관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반영하고 있으나,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은 표준 정관에 반영하고 있지 아니다(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 제27조의 2 코스닥상장협의회 표준정관 제25조).
- 46)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는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주주중시 경영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한 기업들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상장수수료를 감면하는 등의 우대를 하고 있고, 기업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는 것이 주주의 권리보호이다. 집중투표제도, 서면투표제도의 도입 여부 및 주주제안 등 소액주주 보호여부 등이 주주의 권리보호 및 권리행사의 편의성을 평가하는데 세부평가 내용이 된다.
- 47) 김순석, 전계 논문, 310-311면.
- 48)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은 상장법인의 주주 및 주식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무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하여 상장회사의 상장요건으로 통일규격증권용지 사용의무,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 49) 김순석, “주주의결권의 전자적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과제”, 「전자투표제도 활성화 방안」(국회 금융정책연구회, 2009), 33면.

2009년에 상법 개정으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아직 제도의 입법적인 불비와 회사 경영진의 주주참여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하여 제도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전자투표제도의 입법적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본 논문에서 논의한 입법적인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투표의 전제가 되는 전자투표의 사전통지 및 공고에 있어서 공고의 비용절감과 편의성이 있고, 주주총회와 관련된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웹 공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자투표의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고 있으나 투표기간을 총회 전일까지로 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서면투표제도에서 문제되는 것처럼 투표결과가 사전에 모두 집계되어 노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주주권의 자유롭고 편리한 행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시간적인 제약 없이 현장주주총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자유롭게 전자투표제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상법은 전자투표의 운영을 위한 전자투표관리기관에의 위임규정만 두고 있고 전자투표관리기관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관리기관의 자격, 구성, 운영, 의무 등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다. 넷째, 현행 전자투표제도는 주주총회 전일까지만 행사가 가능하므로 주주총회 도중에 수정제안이 있는 경우 이미 행사한 전자투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관하여 여러 가지 해석론이 가능하지만 주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다섯째, 일반 회사의 경우에도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 대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자투표제도의 활성화 방안에는 우선 직접적인 입법방안으로서는 집중투표제와 같이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 회사가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 일정한 규모 이상의 회사에는 전자투표를 강제하는 방안, 전자투표제도를 전자적 소집통지와 연계하여 회사가 전자적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투표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그림자투표를 폐지하여 회사의 전자투표도입을 불가피하게 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입법 이외의 간접적인 활성화 방안으로는 상장회사협의회 등의 표준 정관에 동제도를 반영하거나, 기업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도입하는 방안, 상장회사의 상장 요건에 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 되고 있다. 위의 활성화 방안 중 그림자 투표의 폐지는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다. 그림자 투표가 폐지되면 의결정족수의 충족을 위하여 전자투표제도가 어느 정도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간접적인 활성화를 통하여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는 시장에서 회사의 가치가 상승되어 회사의 경영진을 동제도로 유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그림자 투표의 폐지와 간접적인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전자투표제도의 이용을 증가시키고, 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입법 수단은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곽관훈, “전자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회사법제의 운영과 IT기술의 응용』, 한일산업금융법포럼 발표자료, 2012.
- 김대수,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증권예탁』 제54호, 2005.
- 김성탁, “전자주주총회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연구』 제11권 3호, 2004.
- 김순석, 『전자주주총회』, 한국예탁결제원, 2008.
- _____, “주주의결권의 전자적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과제”, 『전자투표제도 활성화방안』, 국회 금융정책연구회, 2009.
- _____, “주주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에 따른 법적 과제”, 『서울법학』 제18권 제1호, 2010.
- 김재범, “전자식 방법의 상법수용에 관련된 법률문제”, 『상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2003.
- 양만식, “상법상의 IT화”, 『인터넷법연구』 제1호, 2002.

- _____, “서면투표와 전자투표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상사판례연구』 제16권, 2004.
- 이형규, “전자투표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 『경영법률』 제16집 1호, 2005.
- 정경영, “전자금융거래법안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전자증권과 관련하여”, 『증권예탁』 제44호, 2002.
- _____, “전자투표제도의 시행에 따른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증권예탁』 제75호, 2010.
- _____,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23권 제3호, 2004.
- _____, “전자주주총회의 법리에 관한 시론”, 『비교사법』 제12권 제4호, 2005.
- 정경영·이세영, “전자투표제도 도입 이후 주주총회 변화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23권 제1호, 2011.
- 정승화,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와 그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기업법연구』 제26권 제2호, 2012.
- 정완용,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점 고찰”, 『전자투표제도 활성화 방안』, 국회 금융정책연구회, 2009.
- _____,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에 관한 고찰”, 『상사법연구』 제28권 제3호, 2009.
- 정준우,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의 편의성 제고와 그 문제점”, 『법학연구』 제13집 제3호, 2010.
- 정찬영, “주식회사법 개정제안”, 『선진상사법률연구』, 제49호, 2010.
- _____,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상사법연구』 제23권 제3호, 2004.
- 허항진, “개정 상법상 전자투표제도와 주요 법적 논점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제38집, 2010.

[Abstract]

A Study on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Lee Yun-Seok

Assistant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has various benefits. For example, it will provide the minor shareholders with better chances of exercising their rights through the elimination of obstacle of time limitation and distance. And corporation can raise public relations and save much cost with respect to management of shareholder's meeting. Moreover,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is to promote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mpany by providing chances to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forming a quorum, and guiding overseas shareholders' investment opportunities. But the system has not been sufficiently used by companies, and problems have emerged due to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introduction. Among the problems this study reviews the time limit of electronic voting, and construction of voter's intention to the bill changed at the shareholder's meeting, change and withdrawal of voting, activating methods of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Specially, we need to reflect matters about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in the standard articles of a listed company and abolish the shadow voting to prevent the distortion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o activate the system.

Key words : electronic voting system, management of shareholder's meeting, the time limit of electronic voting, shadow voting, activating methods of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